

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0. 17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02. 10. 17

다. 상정일자: 제106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2차 총무위원회(2002. 11. 1)

2. 제안설명요지(장일룡 재무과장)

가. 제안사유

- 재정법 제77조, 같은법시행령 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구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각하여 구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하단동 SK VIEW아파트 사업부지내 포함되는 보존부적합 구유재산을 주택건설촉진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 주체인 SK건설(주)에 매각하고자 함.

○ 매각대상 재산현황

소재지	지목	면적(m ²)		m ² 당 공시지가 (천원)	대장가격 (천원)	소유자
		지적	신청			
합계	5필지	1,210	1,210		781,660	
하단동 845-47	대	663	663	646	428,298	사하구
“ 845-48	“	2	2	646	1,292	“
“ 845-49	“	435	435	646	281,010	“
“ 845-50	“	25	25	646	16,150	“
“ 845-51	“	85	85	646	54,910	“

3. 관련계법령 및 조례

-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(국·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)
-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-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9월 제105회 임시회시 심의한 내용으로서 해당부지는 시공사(SK)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토지임으로 사용시점부터 용도폐지(도로→대지)하는 날까지의 도로점용 변상금과 용도폐지후의 대지 무단사용 변상금은 일괄 납부 조치후 매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5.질의답변요지

질의위원	질의내용	답변요지
총무위원회 전 위원	지난 9월 제105회 임시회시 심사보류한 내용으로서 해당부지는 시공사(SK)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토지임으로 사용시점부터 용도폐지(도로→대지)하는 날까지의 도로점용변상금과 용도폐지후의 대지 무단사용 변상금은 일괄 납부 조치후 매각요망	<p><건설과장></p> <p>○ 2002.12.22일 착공일로부터 도로용도폐지된 일자까지 점용변상금을 부과하겠음.</p> <p><재무과장></p> <p>○ 용도폐지일로부터 매매일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겠음</p>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